

[별표 1]

전통식품명인지정심사기준(제15조제2항 관련)

1. 항목별 기준

항 목	평 가 요 건	평점
1. 식품의 전통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우리나라 고유의 식품임 ◦ 우리나라 고유의 식품이 다소 변형된 것임 ◦ 우리나라 고유의 식품이 아니거나 고유의 식품으로 보기 어려움 	수 우 미
2. 기능보유자의 정통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전승계보 및 기능계승의 내용이 명확함 ◦ 전승계보 및 기능계승의 내용이 다소 미흡함 ◦ 전승계보 및 기능계승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기능보유를 인정할 수 없음 	수 우 미
3. 기능보유자의 경력 및 활동상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기능보유분야의 업종을 조상대대로 가업으로 계승하고, 당해업종에 계속하여 20년이상 종사한 자로서 기능보유와 관련된 가공업 또는 기능전수업을 하고 있음 ◦ 기능보유분야의 업종에 계속하여 20년이상 종사하였거나 조상대대로 가업으로 계승되고 있음 ◦ 기능보유분야의 업종에 계속하여 20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불분명하거나 가업으로 계승되지 아니함 	수 우 미
4. 조리·가공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전통적인 방법을 원형대로 체득하고 그대로 실현할 수 있음 ◦ 전통적인 방법을 체득하고 있으나 원형대로의 실현이 미흡함 ◦ 전통적인 방법이 아니거나 변형된 방법임 	수 우 미
5. 보호가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가공비법이 특수하고 체득이 어려워 보호하지 아니할 경우 그 비법이 소멸될 수 있음 ◦ 가공비법이 특수하고 체득이 어려우나 보호하지 아니하여도 그 비법이 소멸되지는 아니할 것임 ◦ 동일 비법의 보유자가 다수이거나 일반화되어 자연적으로 전승될 것이므로 별도의 보호가 필요없음 	수 우 미

2. 합격판정기준

가. "미"로 평가된 항목이 없어야 함

나. "수"로 평가된 항목이 "우"로 평가된 항목보다 많아야 함